

## 장학 규정

2006. 12. 21. 부분개정	2015. 03. 01. 전면개정	2020. 12. 01. 부분개정
2007. 06. 30. 부분개정	2016. 04. 01. 부분개정	2021. 01. 01. 부분개정
2008. 01. 09. 부분개정	2016. 12. 20. 부분개정	2023. 02. 01. 부분개정
2009. 06. 30. 부분개정	2017. 05. 01. 부분개정	2024. 02. 26. 부분개정
2010. 08. 01. 전면개정	2017. 09. 01. 부분개정	2024. 04. 01. 부분개정
2011. 07. 01. 부분개정	2020. 01. 01. 부분개정	2025. 02. 01. 부분개정
2012. 04. 01. 부분개정	2020. 06. 01. 부분개정	2025. 09. 01. 부분개정
2012. 09. 01. 부분개정	2020. 07. 01. 부분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76조(장학금)에 의하여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학의 장학생 선정과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사기업 또는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2장 장학위원회

**제3조(위원회 설치)**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총장,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사무처장, 학술정보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외 총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05.01., 2020.01.01., 2023.02.01., 2024.04.01., 2025.02.01.>

②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된다.<개정 2017.05.01., 2020.01.01.>

③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 기준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장 장학금 지급

**제7조(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①박애장학금

1. 청운리더십장학금 : 학생 간부에 임명되고,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신설 2015.03.01.>
2. HIT복지장학금(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구의 구성원인 자 <개정 2017.09.01. 2023.02.01.>
3. 청운교직원자녀장학금 : 우리대학 교직원 직계자녀인 자<신설 2015.03.01.>
4. 청운가족장학금 : 우리대학에 가족 2인 이상이 재학중인 자<신설 2015.03.01.>
5. 청운동문장학금 : 우리대학 동문 본인 및 직계존속·비속인 자<개정 2016.12.20>
6.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1조, 제22조 및 법률시행 제42조 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인 자<개정 2017.09.01.>
7. 위로장학금 :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신설 2012.09.01.>
8. 총장특별장학금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9. 교육보호장학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1조, 제22조 및 법률시행 제42조 대상자 중 본인인 자<신설 2017.09.01.>
10. 통일부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7조 및 시행지침 대상자<신설 2017.09.01.>,<개정 2023.02.01.>
11. HIT복지장학금(장애) : 학생 본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설 2023.02.01.>
12. 국가장학금 II유형(교비대응)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 미 참여 시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수혜대상 자<신설 2025.02.01.>

## ②근면장학금

1. HIT마일리지장학금 : 각종 마일리지를 적립한 자<신설 2015.03.01.>
2. HIT봉사장학금 :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신설 2015.03.01.>
3. HIT메이커장학금 : 대학의 이미지를 높이거나 홍보활동을 한 자로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15.03.01.>
4. HIT인턴십장학금 : HIT인턴십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 행정부서 및 학과에서 모범적으로 근로활동을 진행한 자<신설 2015.03.01.>,<개정 2023.02.01.>
5. 효인성장학금 : 충효 정신이 투철한 자<신설 2015.03.01.>
6. HIT피어튜터링장학금 : 우리대학에서 진행하는 각종 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한다.<신설 2017.09.01.>
7. 피어튜터링장학금 :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진행하는 각종 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한다.<신설 2017.09.01.>,<개정 2023.02.01.>

## ③탐구장학금

1. 여덕최우수장학금 : 전체 신입생 중 성적이 수석인 자<신설 2015.03.01.>
2. 총장미래인재장학금 : 학과 신입생 중 성적이 수석인 자<신설 2015.03.01.>
3. 청운인재장학금 : 재학생은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점수 85점 이상이고, 신입생 및 전 공심화과정 입학생은 입학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개정 2021.01.01., 2023.02.01.>

4. HIT글로벌장학금 : 대학이 인정하는 해외프로그램에 선정된 자<신설 2015.03.01.>
  5. HIT외국어우수장학금 : 교내 영어경시대회에 입상한 자<신설 2015.03.01.>
  6. 삭제 <2025.09.01.>
  7. 전공심화장학금 :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에 재학 중인 자
  8. 교외장학금 : 국가기관, 사회단체, 사기업 또는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지급기준에 충족하는 자<개정 2023.02.01.>
  9. 국가장학금 : 본교에 재학 및 휴학 중인 자
  10. HIT외국어향상장학금 : 교내·외 언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신설2015.03.01.>
  11. 맞춤형장학금 : 장학사정관이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정한 자<신설2012.09.01.>
  12. HIT다문화장학금 :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으로 입학한 자<신설 2015.03.01.>
  13. HIT유학생장학금 : 외국 국적 소유자로 우리대학에 입학한 자<신설 2015.03.01.>
  14. HIT-LOC장학금 : HIT-LOC 교육체계에 따라 타 학과 전공교과목을 이수한 학생 중 성적우수자<신설 2015.03.01.>
  15. HIT장학기금장학금 : 적립된 장학기금 중, 기부자가 요청하는 조건에 따라 대상자에게 지급한다.<신설 2017.09.01.>
  16. 행복기숙사장학금 : 행복기숙사 입사학생 중 저소득층 또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행복기숙사에서 추천한 학생에 대하여 생활비 보조성 장학금으로 지급한다.<신설 2020.07.01.>
  17. 교육활동특별장학금 : 코로나19등으로 교육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학업 장려를 목적으로 지급하며, 장학금 세부지급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20.12.01.>
  18. 외국인유학생어학장학금 : 외국인 유학생 중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3급이상 인증을 받은 대상자에게 지급한다.<신설 2025.02.01.>
  19. 외국인유학생성실장학금 : 외국인 유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취득 및 수업 출석률이 80%이상인 대상자에게 지급한다.<신설 2025.02.01.>
- 제8조(배정)** 학생·취업처장은 매 학기별로 장학생인원배정, 장학금액 및 수혜자격 조건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각과 학과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 제9조(추천)** 학과별 장학생인원 배정을 통보 받은 각 학과장은 각과 교수회의를 거쳐 수혜대상자를 학생·취업처에 추천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 제10조(확정)** ①학생·취업처는 각 학과별 추천자에 대하여 지원 자격 및 지급기준 등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 ②장학생으로 확정된 자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였을 경우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③한 학기를 등록하고 휴학한 자가 자퇴를 할 경우는 학자금지원성 장학금에 대하여 대학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2016.12.20.>
- ④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맞춤형장학금, HIT인턴십

장학금, HIT메이커장학금, HIT글로벌장학금, HIT장학기금장학금, 교육활동특별장학금, HIT피어튜터링장학금, 피어튜터링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장학금 등 생활비성·근로성 교내·외장학금 등은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0., 2023.02.01., 2024.02.26.>

**제11조(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 지급결정은(별도로 규정한 장학금 외에는)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지급 기준액)** 장학금은 지급기준에 따르며 장학금액은 등록금 수입의 10%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13조(지급방법)** 별도로 규정한 장학금 외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반환)** 장학금 수혜를 받은 자가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거나 부정 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혜금액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하며, 차후 2개 학기 동안 해당 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부정수혜로 간주하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6.01.>

1. 학생 간부 대리임명 및 부정임명(청운리더십장학금)<신설 2020.06.01.>,<개정 2023.02.01.>
2. 대리근로, 허위근로와 같은 부정근로(HIT인턴십장학금)<신설 2020.06.01.>,<개정 2023.02.01.>
3. 서류 제출이 필요한 장학금 중 허위서류 제출자<신설 2020.06.01.>

#### 제4장 특정장학기금 관리

**제15조(특정장학기금)** 본 대학의 장학 사업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서 기부한 기부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16조(정의)** 특정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본 대학 장학 사업을 위하여 기부한 현금,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재산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17조(종류)** 기금의 종류는 조성된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장학기금명	기부(조성)일자	기부자	기부금액(원)	목적
봉우(신현성)장학금	2005.8.31	신현성(전임상교원)	1천만원	임상병리과 후학양성을 위하여 기부
청산(이상귀)장학금	2007.8.31	이상귀(전유아교원)	1천만원	유아교육과 후학양성을 위하여 기부

**제18조(기금의 운용)**

- ①기금은 대학 장학위원회가 관리, 운용하되,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예탁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

권 매입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운용

**제19조(장학금의 재원)** 기금에 의한 장학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기타수익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20조(장학금 지급기준과 절차)** 기금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대상, 수혜인원 및 지급액 등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는 기부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21조(장학사정관제도)** 장학사정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전문기술석사과정**

**제22조(장학금 종류 및 선발기준)** 전문기술석사과정 장학금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9.01.>

- 1. 기술석사장학금 :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 및 재학 중인 자<개정 2025.09.01.>
- 2. 기술석사인재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 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개정 2025.09.01.>
- 3. 기술석사복지장학금 : 저소득층 가구의 구성원인 자<개정 2025.09.01.>
- 4. 기술석사특별장학금 : 논문발표 등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자로 지도교수가 추천한 자<개정 2025.09.01.>
- 5. 전문기술석사과정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02.01.]

**제6장 보칙**

**제23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시행세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02.0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의하고 학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대전보건대학 장학생 선발 및 지급규정, 대전보건대학 장학금 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특정장학기금관리 규정, 특정장학기금관리 시행세칙, 대전보건대학 무이자학자금 대여 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대전보건대학 무이자학자금 대여 관리규정에 의거 대여한 장학금의 채권 채무는 이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급된 국가장학금 I 유형 장학금은 이개정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단, 여덕최우수장학금, 총장미래인재장학금, 청운인재장학금은 2015학년도 2학기 이전 장학사정을 한 자는 종전 규정 적용 시행하고, 이후 장학사정을 한 자부터 본 규정을 적용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단, HIT복지장학금 중 장애학생 지원 장학금은 2018학년도 1학기 이전 장학사정을 한 자는 종전 규정 적용 시행하고, 이후 장학사정을 한 자부터 본 규정을 적용 시행하며, HIT장학기금장학금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본 규정을 적용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시행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단, 규정 시행일 이후에 2020학년도 장학사정 대상자 발생 시 종전 규정을 적용 시행하며, 2021학년도 장학사정대상자부터 본 규정을 적용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단, 통일부장학금은 2022학년도 장학대상자부터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단, 교육부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확정 후 지급된 전문기술석사과정 장학금은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단, 국가장학금 II유형(교비대응) 장학금은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전문기술석사과정 2025학년도 2학기 장학금은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